2019년도 제1회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19. 6. 1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Ⅰ.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

○ 없 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사 항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세출예산	22,874,706	16,612,706	6,262,000	37.7
일반회계	22,874,706	16,612,706	**6,262,000**	**37.7**
2019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5,814,000	5,432,000	**382,000**	**7.0**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	5,614,233	614,233	**5,000,000**	**814.0**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2,560,251	2,050,251	**510,000**	**24.9**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	620,000	250,000	**370,000**	**148.0**

Ⅱ. 검토의견

○ 2019년 도시공간개선단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사업에서 62억 6천2백만원을 증추경하는 것으로, ‘2019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행사장소의 하나인 DDP의 대관료를,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은 SH공사의 대행사업비 중 일부를,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은 서울마루 시설 설치 및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추가분을,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 네트워크 조성’은 사업구간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추경으로 편성함.

○ **‘2019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는 올 하반기(‘19.9.7.~11.10., 65일간)에 돈의문박물관마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도심 주요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19년 예산이 5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운영 중인 DDP 대관료 예산이 누락되어 이번 추경에서 3억 8천2백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임.

DDP 대관료는 행사 1개월 전까지 선납이 원칙이나, 2017년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시, 행사 종료 후 수익금(입장권,기념품) 및 출연금(잔여예산)으로 DDP 대관료를 정산한 바 있어[1] ‘19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17년 당시 DDP 대관료는 3억 3천4백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행사 수익금 및 후원금으로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후원금은 걷히지 않았고 수익금과 출연금 잔여예산으로는 DDP 대관료를 모두 지불할 수 없어 약 6천3백만원이 미수금처리되었던 상황에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19년에도 DDP 대관료의 후불 정산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서 자의적이고 안일한 예산 편성을 드러낸 것으로 향후 이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음.

DDP 대관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사무국 납부금액			미수금 처리
	수익금 (입장권,기념품)	출연금 잔여예산	총액	
334,130,000원	111,393,010원	160,000,000원	271,393,010원	**62,736,990원**

1)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방침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DDP 대관료를 행사 후 후불납부로 결정

이번 추경안이 승인되어 DDP 대관료가 선납되면, 입장료 등 수익금은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수입)으로 처리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음.

○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국제교류, 아카이브, 교육·시민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민간위탁한 사업으로[2], 민간위탁금 총 39억원 중 ‘19년 예산으로 1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서울마루의 (‘19.4.18. 서울마루 개장, ’19.3.28.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개관) 편의시설 설치 및 행사 개최, 그리고, 전시관 시설 보완 및 운영 비용 등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5억 1천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임.

서울마루는 도시건축전시관의 옥상부로, 당초에는 성공회성당 옥외공간과 통합한 광장으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도시건축전시관의 옥상공간만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 상황에서, 크지 않은 옥상부에 편의시설 설치 및 행사 개최가 바람직한지 그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서울마루의 디자인 컨셉이 ‘비어있는 공간’이고, 바로 인근에 광화문광장·서울광장 등 넓은 행사 공간들이 있으며 덕수궁 및 성공회성당, 서울시청·서울시의회 등 주변으로 편의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서울마루에도 시설 설치 및 행사 개최가 필요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오히려, 서울마루는 설계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 및 관조적 공간으로서 인근의 넓고 활동적인 옥외공간과 차별화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공간 운영 및 서울마루 공간 스케일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추경 증액 내역에서 서울마루 시설 및 행사 관련 비용은 삭감하고 전시관의 시설 보완 및 운영비 추가 사항 등만 증액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2) 한국건축가협회·엠아이티존이 2년간(‘19.1.~’20.12.) 운영

○ **‘한강변 주요사업 연계를 위한 보행네트워크 조성’**은 여의도~노량진~노들섬 사이에 문화여가시설 등 소규모 신규거점(8개소)을 계획하는 사업으로 ‘19년에 2억 5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동작역까지 12개소의 시민여가시설을 설치하고 보행로·자전거도로를 재구조화하는 계획으로 사업구간 및 사업범위가 확대되어 설계비 및 운영비 추가분 3억 7천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임.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은, 동작구가 한강대로 백년다리 조성사업[3] 및 흑석빗물펌프장 이전[4] 등과 이 사업을 연계하여 수변 접근성 향상을 요청함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수변 접근성 및 연결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범위 확대는 타당

3) 한강대교 남단에 기존 교량을 이용하여 노들섬과 노량진을 잇는 보행자 전용교 개통 계획(2021년 목표, 도시재생본부 소관), 한강대교 남단(노들섬~노량진) 아치 구조와 기존 교각을 이용, 기존 차도는 유지하면서 쌍둥이 다리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폭 10.5m, 길이 500m 보행교를 조성하고, 내년 초 철거 예정인 ‘노량진 고가차도’ 일부 구간을 존치시켜 한강대교 보행교와 연결하여 노들역, 한강공원, 용봉정 근린공원 등 노량진 일대 주변으로 육교 형태로 보행 연결성을 확보할 계획임. 또한, 노들섬 쪽으로도 보행육교와 연결할 계획임

4) 흑석빗물펌프장을 현충로 맞은 편 부지로 이전 추진 중이며(‘16.6.~’22.12.), 현재 흑석빗물펌프장 부지는 흑석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 원래 공원 등으로 계획되었으나,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흑석빗물펌프장 부지를 제척하여 유보지로 변경 결정(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9-132호)되었고, 유보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음

하다고 사료되고, 사업계획 변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한강대로 백년대교 조성사업이 올 3월에 발표되고 동작구의 수변 접근성 향상 요청도 올 2월부터 요청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안 편성은 이해될 수 있다 판단됨.

다만, 본 예산을 편성할 시 사전에 관련 부서·자치구 간에 보다 긴밀한 공유·협의를 통해 한강변 관련사업 간의 충분한 검토를 선행하여 사업계획의 치밀성을 높이고 본 예산 편성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기존계획	변경계획
여의나루역 ~ 노들역 ~ 흑석역(2.9km)	여의나루역 ~ 노들역 ~ 동작역(5.3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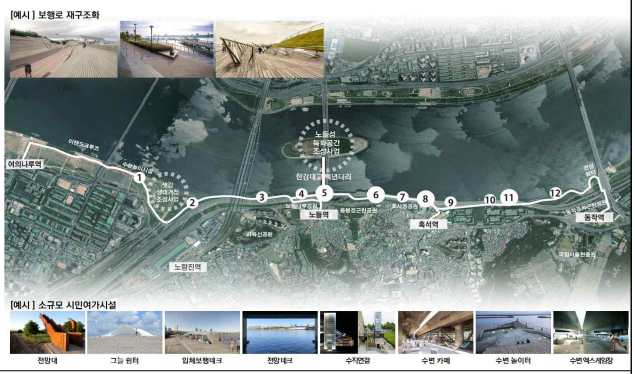
※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1) 소규모 시민여가시설 8개소 조성	※ 한강변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1) 소규모 시민여가시설 12개소 조성 과업2)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재구조화 (5.3km)

○ **‘서울 도시건축센터 운영’**의 ‘19년 예산은, 돈의문박물관 운영·관리 업무가 문화본부로 이관되면서(’19.1.) 돈의문박물관마을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서울도시건축센터만의 필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8년 9월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SH공사 대행사업비를 정산토록 결정된 바[5], 이번 추경에서 대행사업비 총 374억원 중 50억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순증액코자 하는 것임.

“돈의문박물관 추진 경위(붙임1)”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돈의문 제1구역 재정비촉진계획에서 당초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종로구 귀속),

‘15년 5월 시장방침으로(제100호) 근린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돈의문 역사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고(’16.9.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으로 SH공사가 참여키로(선투자 후회수, **사업비 174억원**, 위탁기간 19년) 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돈의문1구역 준공 후 기부채납) 공유재산 위탁개발은 불가한 관계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대행방식[6]으로 S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토지

---

5) ·박물관마을 활성화관련 현안조정회의(’18.9.4 시장주재) : 박물관마을은 SH공사 수익구조 중심에서 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으로 재설계, 임대수익으로 투자비는 회수가 어려우니 투자심사 등 절차 이행을 거쳐 SH공사 사업비 정산 검토
·현안조정회의(’18.9.4 행정1부시장 주재) : 도시공간개선단에서 SH공사 대행사업비 정산을 위한 투자심사 등 후속업무 추진

6) 「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1항 :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 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

소유권 확보시 위탁협약을 체결키로 하고 SH공사에서 우선 자체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출한 후, 준공하면 임대수익 등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대행협약을 체결함('15.12.30.).

이후, '18년 9월 시장 주재 박물관마을 활성화관련 현안조정회의에서 수익구조 중심에서 문화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재설계되면서 임대수익으로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서울시가 SH공사에 사업비를 정산코자 이번 추경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됨.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쟁점과 추경 타당성"

돈의문박물관마을은 '17년 8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20년에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및 소공원 조성 등 2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서〉

구 분		주 요 내 용
내 용	전 체 규 모	- 부 지 : 9,770.10㎡ (문화시설 9,042.50㎡ / 소공원 727.60㎡) - 연면적 : 9,203.97㎡
	세 부 내 용	- 총 43개동 (신축5동, 증축및대수선 26동, 대수선10동, 개축2동, 철거15동) · 1단계 : 40개동 / 2단계 : 3개동
사업비 (백만원)	총 계	- 121,530백만원(사업비 37,435백만원+토지기부채납 84,095백만원)
	재원별	- 시비 : 37,435백만원(토지는 기부채납) · 토지기부채납 : 84,095백만원 / 사업비 : 37,435백만원
	회계별	일반회계

※ 총 43개동 중 40개 완료 / 2단계 사업 :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및 소공원 조성 등('20년 완료)

SH공사가 정산을 요청한('18.10.) 대행사업비 내역을 보면, 1단계 330억원, 2단계 43억원 등 총사업비 374억원(토지비 포함시 1,215억 3천만원)이 산정되었고(붙임2) 이 중 12억원만 정산되었음[7].

7) (단위 : 원)

돈의문박물관마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및 시 투자심사 대상으로서[8], 당초 사업비(공사비) 전액이 SH공사 재원이 투입되었다고는 하나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부담(공사비 지급)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어[9]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해당 절차들이 모두 생략되었고, 급기야는 사업 초기에 수행되어야 할 이러한 절차를 사업이 거의 완료된[10] 상황에서 수행하게 됨으로써 조사 및 심사의 실효성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타당성 조사 의뢰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반려[11], '19.3. 시 투자심사 '19.5.),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사업 타당성 자체가 사실상 검증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수백 억원의 시민 세금을 투입코자 하는 무책임한 사업 행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서울시와 SH공사 간 총사업비 규모를 정하지 않고 대행협약이 체결되

연번	내 용	일 자	금 액	비 고
1	서울시 여입 금액	'15. 06. 25	500,000,000	조합이 공원조성비(24억5천만원) 중 일부를 설계용역비로 SH공사에 지급
2	서울시 여입 금액	'16. 05. 11	713,489,800	
3	예금결산이자	'17. 12. 16	1,475,355	
	계		**1,214,965,155**	

8) ·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총사업비 약1,180억원(공시지가 m^2당 930만원)】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라 자치단체 공유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예산편성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유재산의 가격(개별공시지가)을 총사업비에 포함

· 현재 동 시설의 총 연면적 중 문화시설 비율이 59.6%로 중앙투자심사 대상기준인 75% 이하로 市 투자심사 대상

※ 문화본부에서 재수립하고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 기본운영계획'에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문화시설 비율 75% 이하로 조성

9)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 대행협약서 제5조 및 제6조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각종 경비를 시가 SH공사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대상임(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의 투자심사 대상인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으로 **협약체결 당시는 아니더라도 사업비 지급 협약체결에 따라 장래에 시 재정부담 발생**)

10) 공정률 97%, 실제 건축공사는 100% 완료

11) 반려 사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기투입비율 96.6% 수준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거하여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며 조사의 실효성이 없음

었고('15.12.30), 공사비가 당초('15년) 145억원에서, '16년 225억원, '19년 374억원으로 증액되었음에도 변경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12],

(단위/백만원)

구 분			당 초 ('16년 6월)	최 종 ('19년)	비고(증감)
총 사업비			**22,539**	**37,435**	**14,896**
1단계	공 사 비		20,900	27,826	6,926
	용 역 비		1,306	1,642	336
	SH공사	공사	304	3,315	3,011
		설계	22	151	129
	기타비용	공사	7	57	50
		설계		94	94
	사업비 계		**22,539**	**33,085**	**10,546**
2단계	경찰박물관, 한옥이축 등		0	4,001	4,001
	SH공사		0	349	349
	사업비 계		**0**	**4,350**	**4,350**

특히, SH공사가 산정한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시 차원의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채 SH공사가 요청한 대행사업비 내역 그대로 시 투자심사를[13] 받음으로써 시종일관 부실한 사업 태도로 임하고 있음.

서울시 방침(재산매입, 활용 및 매각에 대한 市차원의 총괄·조정기능 강화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68호, '14.3.)에 의하면, 재산매입(신·증축 포함) 및 활용, 매각 등에

12) '16년 6월 市 원가심사(SH공사→계약심사과) 이후 '17.8월 1단계 공사완료시까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심사(변경) 절차 미이행. 이에 대하여 '18년(3.26.~4.25.) 서울시 감사를 받아 공사관리관 주의 조치를 함

* '17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에 맞추어 공사기한을 준수코자 서울시의 계약심사(변경)를 받지 않고 우선시공 승인만 받은 채 공사를 추진하였고 SH공사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심사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사항은 공정이행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임을 들어 서울시는 감사 조치함(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제2절 및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제5호 위반)

13) 시 투자심사 결과(조건부 추진): 1단계 조성공사 사업비에 대한 검증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산금액을 확정할 것,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등 2단계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후 별도 투자심사 할 것,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할 것

관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검토하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코자 하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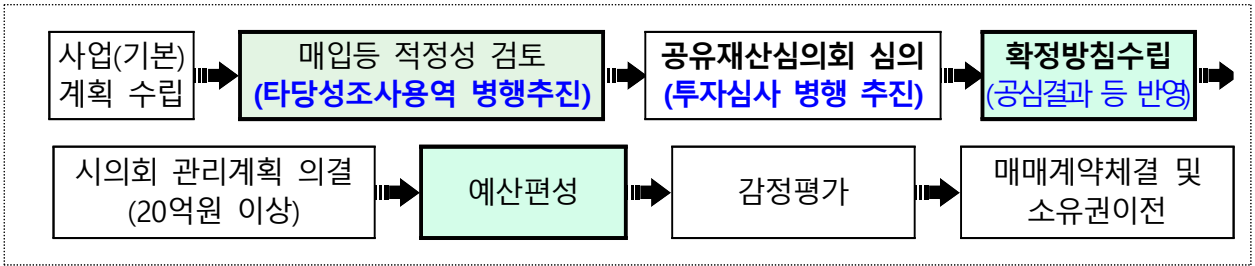

이 추경안은, 아직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SH공사의 사업비 정산금액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SH공사에 분할지급이 가능하므로(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사업 대행협약서 제6조) 이번 추경을 통해 SH공사 사업비 일부만이라도 우선 정산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정산이 늦어질수록 SH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14] 정산을 서두르는 것으로 파악됨.

원칙적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 사업비 정산금액 확정과 필요 절차(공유재산심의,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를 이행한 후 '20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SH공사의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은 서울시의 명료한 의무이고 지급이 늦어질수록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므로, 도의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이번 추경안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14) '19년 말 기준 SH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약 21억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50억원을 올 7월까지 지급할 경우에는 약 6천만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것으로 산정됨

* 돈의문박물관마을의 각종 공사가 완공되면 공사 건건이 SH공사 지급이자가 산출되고, 이자는 SH공사 2015~2019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12p)에 따라 시중금리(민간차입금 가중평균이자율)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가운데, 우선 3%를 적용하여 이자규모를 산출하였고 정산시 서울시와 이자율 협의를 통해 다소 조정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돈의문박물관마을(지방재정투자사업) 사업절차(자료: 도시공간개선단)〉

돈의문박물관마을은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업 추진 외에도, 토지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종로구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등 사업 전반적으로 작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되어 온 바, 사업계획 변경 경위와 사업 타당성, 그리고, 사업 절차 및 사업 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감사를 통해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 일	rienrien@seoul.go.kr

〈붙임1〉 돈의문박물관마을 추진 경위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 **'06.4~'13.8 「돈의문1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 (市)
- 근린공원설치(종로구 귀속), 국공유지 무상양도(→ 조합)

○ **'14. 1. 3 「돈의문1구역 정비계획」 변경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2호)
- 전면철거 예정인 "새문안 동네"를 한양도성과 어울리는 역사공원으로 조성
-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을 선별하여 해체·보관 후 공원조성 시 복원

○ **'14. 2. 2 도시재생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2호)
- 돈의문1구역 역사공원 내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재생박물관 조성

○ **'15. 5. 7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100호)
- 근린공원 → 문화시설변경결정, 위탁개발방식(SH공사), 위탁기간19년

○ **'15.10. 8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SH공사)

① 토지소유권이 돈의문1구역 준공 후 기부채납되는 관계로 위탁사업으로 개발 불가
② 우선 대행방식(지방공기업법)으로 사업추진, 추후 토지소유권 확보시 위탁협약 체결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H공사 자체예산으로 우선 사업비 확보 및 지출

○ **'15.11. 5 서울도시건축센터」 설립 방침** (시장방침 제322호)

○ **'15.12.30 돈의문 재정비 촉진지구」 총괄사업관리자 협약서 체결**
- 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 한옥이축 등

※ 「돈의문 박물관마을("새문안 동네") 조성사업 대행협약서

○ **'16. 7.26 건축허가 및 촉진계획 변경 결정 입안**(종로구)
- 근린공원 → 문화시설로 변경, 토지는 종로구, 시설물은 추후 협의

○ **'16. 7.27 돈위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착공** (市)

○ **'16. 9. 8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市)
- 문화시설(토지 및 리모델링 시설물)은 서울시 귀속(조성 및 관리)

○ ‘17. 6.30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고시(종로구)

- 사업부지(토지)는 종로구로, 건축물은 서울시로 기부채납

○ ‘17. 8.22　　1단계 공사완료 및 임시사용승인

○ ‘17. 9. 2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11월까지)

○ ‘18. 9. 6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소공원) 사업 공사완료 공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1단계)】 (시 공고 제2018-2029호)

- 문화시설 대지면적 9,042.5㎡ / 연면적 9,203.97㎡

○ ‘18.10.15　　1단계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요청 (SH공사 → 市)

○ ‘19. 1.18　　타당성조사 의뢰 제출 (市)

○ ‘19. 3.21　　타당성조사(돈의문 박물관마을) 의뢰 반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년1차 타당성 조사 선정위원회 검토 결과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기투입비율 96.6% 수준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의거하여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며 조사의 실효성이 없음.

○ ‘19. 3.29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의뢰서 제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19. 4.25　　SH공사 사업비 제출 (2단계 사업 반영, 약 374억원)

○ ‘19. 4.30　　투자심사 대상사업 심사의뢰서 보완제출

○ ‘19. 5.14　　투자심사 개최(결과:조건부 추진)

○ ‘19. 6~7　　공유재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사업계획 수립 (주관부서) ▶ 사전적정성 검토 (자산관리과 & 공공개발기획단) ▶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19. 7.11)** ▶ 확정방침 수립 (필요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19.8.23)** ▶ **예산의결** ▶ 사업추진 (감정평가, 계약, 기본실시설계 등)

〈붙임2〉 SH공사 사업비 정산 관련 (자료: 도시공간개선단)

● SH공사 정산 요구 : **37,435백만원** (1단계 33,085백만원, 2단계 4,3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회 산출기초	금 회 금 액	비 고
총 사업비			-	**121,530**	
토 지 비			공시지가('18년도) 반영	84,095	
사업비 합계				**37,435**	
공사비	계			**27,826**	
	건 축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공사 ☞ (1건) - 1단계 준공금액 / 준공 : '17.8.30	20,884	
	전 기		전기공사 ☞ (1건) - 1단계 준공금액 / 준공: '17.8.30	1,177	
	통 신		통신공사 ☞ (1건) - 1단계 준공금액 / 준공 : '17.8.30	551	
	지급자재비		지급자재(조달청 '17년 지급) ☞ (7건) - 레미콘, 한식기와, 조경설재, 조명기구, 분전반및전동기제어반, 승강기, CCTV,	1,380	
	이 설 비		토목·기계·전기분야 ☞ (9건) - 토목분야(4), 기계분야(1건), 전기분야(4건)	215	
	기타공사비		기타 공사(등) 관련분야 ☞ (7건) - 전시물제작설치, 관리운영수립,석면해체,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3건), 지정폐기물처리	3,619	
용역비	계			**1,642**	
	설계	건 축	건축,토목,기계,소방,조경공사 ☞ (1건) - 계약금액 기준(진행중) / 2단계 완료시 준공	1,340	
		전기·통신	전기·통신공사 ☞ (1건) - 계약금액 기준(진행중) / 2단계 완료시 준공	69	
	기타	기타용역	정밀안전진단 등 ☞ (5건)	233	정밀안전진단 석면조사 문화재시굴 한옥자재보관 가림벽시안
기타	계			**3,565**	
	대행수수료 및 기타비용		'대행협약에 따라 설계대행(4%) 및 공사대행(4.5%) 수수료 / 기타비용	3,565	
2단계	계			**4,357**	
	사업비		경찰박물관 리모델링, 소공원 조성 등 2단계 사업비용	4,001	
			SH공사 이자비용 등 공사외	356	